

속 초 시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선	기 관 의 장
람	

공  보

제842호 2014년 3월 17일(월)

조 례

○ 속초시 정신건강증진 조례 2

회 란									
-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발행 : 기 획 감 사 실 (전화 : 639-2223, FAX : 639-2106)

속초시의회에서 의결된 속초시 정신건강증진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.

2014년 3월 17일

속 초 시 장 채 용 생 인

속초시 조례 제2364호

속초시 정신건강증진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역보건법」 제9조, 제24조 및 「정신보건법」 제4조, 제13조에 따라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질환자의 치료·재활 및 사회복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정신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정신질환자”란 「정신보건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.
2. “정신보건시설”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.

제3조(시장의 책무) ① 속초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시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정신질환을 예방하며, 정신질환자의 재활 및 장애극복, 사회복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정신질환의 예방과 재활을 위하여 정신건강증진센터와 정신보건시설간 연계체계 구축, 정신질환의 예방, 정신질환자의 발견·상담·진료·사회복귀 훈련 및 이에 관한 사례관리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.

제4조(정신보건사업계획의 수립) 시장은 정신보건사업계획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수립하여야 한다.

1. 정신질환의 예방 및 정신질환자의 재활사업
2.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기획 및 자원 조정
3. 정신보건관련 자원파악을 위한 지역사회 진단 및 조사연구
4. 생명존중 문화조성 및 자살예방사업
5. 생애주기별 정신보건사업
6.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 및 홍보사업
7.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에 따른 사업평가
8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5조(실태조사) ① 시장은 정신질환자의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.

- ② 시장은 정신질환자의 실태조사 및 통계를 수집·분석 및 관리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 조사·연구기관을 지정하여 그 사무를 지원할 수 있다.
- ③ 시장과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수집한 자료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.
- ④ 실태조사의 방법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「법 시행규칙」 제1조의2에 따른다.

제6조(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) ① 시장은 정신보건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속초시정신건강증진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를 둔다.

- ② 센터는 시장이 관리·운영하되, 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·운영을 위하여 「법 시행령」 제3조의2에서 정한 기관이나 단체(이하 “수탁자”이라 한다)에 위탁할 수 있다.
- ③ 제2항에 따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위탁업무, 위탁기간, 위탁조건, 관리책임 및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
- ④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재위탁 할 수 있다.
- ⑤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「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

제7조(센터업무)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정신질환자 발생예방 및 정신보건사업

2. 정신질환자 발견 등록 및 전문 의료기관과의 연계사업
3. 정신보건 관련 자원 파악을 위한 지역사회 진단 및 조사연구
4. 정신보건사업에 대한 자문 및 보건 복지인력 교육
5. 정신질환자 및 그 가족의 치료 및 극복에 관한 업무
6.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해소와 홍보사업
7. 정신질환자의 사회 복귀 촉진을 연구 조사와 상담에 관한 업무
8. 자살예방 및 위기 개입 서비스 사업
9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보건사업

② 센터는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, 정신보건전문요원이나 그 밖의 전문 인력으로 하여금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.

제8조(수탁자의 선정) ①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.

② 센터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제3항을 입증하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

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수탁자를 선정한다.

1. 위탁사무수행에 필요한 전문 인력, 기구, 장비, 시설 및 기술수준
2. 재정적인 부담능력
3. 책임능력, 공신력
4. 위탁사무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, 사업실적 등

제9조(수탁자의 의무) ① 수탁자는 시민의 정신건강증진과 정신보건사업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특히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.

② 수탁자는 센터이용자 및 센터의 시설과 장비 등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, 수탁자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 할 수 없다.

③ 수탁자는 제2항에 따라 이용자의 센터이용 중 사고 등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배상을 하여야 하며, 계약상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.

④ 수탁자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센터에 대한 위·수탁 계약 후 10일 이내에 손해보험회사와 계약하는 책임보험에 가입한 후 그 증서

또는 사본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보험가입 기간은 센터의 위·수탁 계약기간으로 한다.

⑤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정한 규정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
⑥ 수탁자는 위탁기간 만료시 재수탁 의사가 없거나, 위탁기간 중 수탁의사가 없을 경우 90일 전까지 시장에게 수탁포기에 관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 하여야 한다.

제10조(위탁의 취소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.

1. 위탁협약을 위반한 경우
2. 수탁자가 제9조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
3. 제15조에 따른 조사 및 검사에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아니하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
4. 수탁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
5. 그 밖에 수탁자가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거나, 공익상 위탁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제11조(시설 및 장비 등 반환) 수탁자는 제10조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각종 시설, 자료, 장비 및 비품, 사업비 잔액 등 수탁 재산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.

제12조(운영비 지원) 시장은 제6조에 따라 관리·운영을 위탁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13조(이용제한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센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.

1.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감염병 환자
2. 정신질환자로 적절한 치료를 거부하거나 센터이용에 따른 질서를 지키지 않는 사람
3. 음주나 폭력 등으로 센터의 시설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람
4. 그 밖에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거나 방문 민원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

있는 사람

제14조(회계 및 결산) ① 수탁자는 해당 회계연도 개시 60일 전까지 다음 연도 센터 운영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수탁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③ 수탁자가 예산을 집행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의 정신보건사업 관련 지침의 회계관리 규정에 따라 이를 집행하되, 이에 해당 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「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·회계 규칙」과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을 준용한다.

④ 수탁자는 사업결산서 및 사업보고서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15조(지도 및 감독)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연1회 또는 수시로 수탁자의 사무에 대한 장부 및 서류를 조사하거나 검사할 수 있으며,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조사결과에 따라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

제16조(변상책임 등) 시설의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훼손한 때에는 원상복구에 드는 비용을 변상하여야 하며, 이용자 본인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.

제17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체결된 위탁계약은 계약기간의 범위에서 유효한 것으로 본다.